

# 本會記事

## 理事會

第7回理事會 1967年 11月6日 17.00時 協會會議室에서 理事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 報告事項

1) 決裁中인 扶餘博物館에 對한 建議는 文面 整理하여 提出키로함.

2) 旱害義捐金 및 間諜잡기 遺家族돕기 義捐金 支出함.

3) 建設部會議 結果

① 要望事項 1. 建築士의 級別廢止 2. 「建築界」에 掲載할 統計資料 協助 要請 3. 會館建立地 確保 要請

### 討議及 決議事項

1. 建築士法改正案 草案 프린트하여 配付키로함.

2. 晉州分所 閉鎖 및 馬山, 河東分所 設置件은 支部總會 承認事項으로함.

3. 其他 非公開

第8回理事會 1967年 11月 11日 11.00時 協會會議室에서 開催함.

### 討議及 決議事項

1. 會誌印刷 廻付承認; 會員作品을 중점적으로 게재할것이며 68年 1月號부터 題號를 建築士로 할것.

2. 事務室問題; 正陽빌딩 5層으로 移轉키로하고 總務理事에게 委任함.

3. 京畿道支部 質疑에 對하여

가. 實績會費의 徵收에 있어서 不許可處分된 것도 징수하는 것을 原則으로하되 支部長이 實質的으로 不許可로 設計費를 못 받음을 確認했을 때에는 免除할 수 있다.

나. 仁川 連合會 組織 承認要請은 承認事項이 아니며 支部의 自治로 自律的으로 取扱하도록 함이 可함.

4. 全南支部 質疑에 對하여

가. 建築許可申請書에 監理者 署名捺印의 件은 義務를 다해야 함으로 捺印해야함.

나. 未告示地區의 建築에 對하여 公證人의 證書를 添付해야 許可하는 法的 根據如何 問題는 建設部의 有權의 解釋을 들어서 回示키로함.

다. 稅率引下에 있어서 43%로 引下되었음이 事實으로 國稅廳과 交渉하여 適用 받도록 할것.

다. 學力偽造로 除名된 會員에 對하여 學力偽造로 建設部에서 免許取消되었음으로 協會에서도 除名되었음.

第9回理事會 1967年 11月23日 17.00時 協會會議室에서 理事全員과 金源安 서울시 支部長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함.

### 討議及 決議事項

1. 支部長會議開催件은 12月中에 開催키로함.

2. 身分證明書 發給은 年一回 更新키로함.

3. 定款改正案 再調整

가. 會計年度는 1月1일부터 12月31日까지로함

나. 定期總會 本部 11月中, 支部 10月中에 開催키로함.

다. 豫算은 本部豫算外에 支部豫算計數도 包含키로함.

4. 政府綜合廳舍設計에 對하여

羅相振會員이 設計契約에 依해 設計中인데 美國人設計士에 다시 設計委囑한다하니 委員會를 構成 對策을 講究키로함.

5. 建築士法 改正案 內容을 檢討後 意見을 各自 提出로함.

6. 報酬基準 補完內容 檢討함.

第10回理事會 1967. 11. 28 10. 30時 協會會議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 討議及 決議事項

1. 政府綜合廳舍 設計問題는 指導委員會에서 다루고 總務處長官을 訪問키로 하고 建議書作成토록함.

2. 各委員會 委員 改選은 定款에 依해 任期가 滿了되었음으로 이를 改選함.

企劃委員會 委員 17名

指導委員會 委員 9名

倫理委員會 委員 7名

研究委員會 委員 11名

稅率對策委員會 委員 8名

示方書制定委員會 委員 9名

編纂委員會 委員 7名

(名單 11月號에 掲載)

3. 支部長會議 1967年 12月 7日(木) 15時 開催키로함.

第11回理事會 1967年 12月 1日 10.00時 協會會議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報告事項

政府綜合廳舍 設計問題에 關하여 指導委員會에서 다루도록 第10回 理事會에서 決議된바에 따라 指導委員會를 召集하고 檢討한 結果 全 建築分野에 關聯된 問題이니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다루도록 決議 되었는바 委員會 構成을 다루어야 겠음.

決議事項

- 1) 委員會 名稱 : 政府綜合廳舍 建築對策委員會.
- 2) 委員 : 金在哲會長, 姜奉辰理事, 姜大雄理事, 康晉參理事, 金重業, 李天承, 宋政求, 姜明求, 金東珪, 金壽根, 裊基濼 等 11名.
- 諮問委員 : 洪鵬義, 金熙春, 金正秀, 邊普輝, 威性權 等 5名.

3) 活動範圍

가. 計劃, 連絡, 調整, 推進에 對한 權限을 委任한다. 但 委員會는 理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나. 우리 政府廳舍이니 만큼 總務處를 도와서 보다 나은 廳舍를 짓도록하고 부당한 外國技術用役의 침투를 防止한다.

- 다. 事業推進事項을 수시로 理事會에 報告한다.
- 라.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 事前 理事會의 承認을 받는다.

4) 第1回 委員會를 12月 2日 16時에 召集한다.

第12回 理事會 1967年 12月 6日 16.00時 協會 會議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討議事項 及 決議事項

- 1. 政府綜合廳舍 建築對策委員會 經過報告 및 建議書(協會案)討議.
- 2. 支部長會議 案件 : 油印物에 依해 討議함.
- 가. 會費納付問題
- 나. 分所設置規程 討議事項으로함.

第13回 理事會 1967.12.14 協會 會議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報告事項

政府綜合廳舍 建築對策委員會 經過報告 決議事項.

- 1. 建設部 指示 에의한 名儀貸與 및 無免許者 調査 各支部에 調査報告토록 指示.
- 2. 編纂委員會 委員 追加 委囑.
- 金鎮千, 李鍾泰.

第14回 理事會 1967.12.21 本協會 會議室에서 개최함.

第15回 理事會 1967.12.26 協會 會議室에서 개최함.

합.

決議事項

- 1. 支出抑制 : 財定事情에 의거 不可避한 경비 以外는 지출을 억제할것.
- 2. 정부종합청사 건축대책위원회 위원추가 위촉, 車景淳, 安仁模, 金源安氏 3名.

第16回 理事會 1968.1.11 協會 會議室에서 개최함.

報告事項

建設部 산하단체장회의 결과보고.

決議事項

建築士業務 報酬基準을 早速히 認可 받도록 추진 할것.

支部長 會議

第1回 : 1967.12.7. 15.00 協會 會議室에서 개최함.

協會 業務에 대한 담당이사의 보고에 이어 各 市道 支部長의 支部 現況 보고가 있었다.

指示事項에 있어서 1) 支部業務태세 제정비. 2) 정기보고 이행, 3) 정회원회비 징수 사무취급, 4) 신분증명서 갱신. 5) 지부장 사진 제출. 6) 도서등록 사무취급. 7) 회지원고 수집 등. 7개항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시달 되었다.

토의사항에 있어서

- 1) 課稅表準率. 2) 會費徵收 方案. 3) 設計料金 덤핑 防止 對策. 4) 分所 및 連絡事務所 設置規程
- 5) 建設評論 구독에 대한 장려 등에 광범위하게 토론을 전개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 1) 정관개정안 재조정안에 있어서 예산안의 건설부 승인에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가예산이 집행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支部 10月 本部 11月總會로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임을 밝히고 臨時總會를 3月頃에 召集 改正도록 준비중임.

2) 협회 뺏지에 관한 통제 및 규제.

3) 건축사법 개정에 관해서 각지부장의 의견을 참작 본부에서 연구중인 개정안에 반영 시키기로함.

사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 있다.